

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 정관 제 21 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- 다 음 -

1. 일 시 : 2013 년 07 월 19 일 (금) 오전 9 시

2. 장 소 :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 2 동 문화센터 4 층 강당

3. 회의목적사항

가. 부의 안건

- 제 1 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

1) 정관조항 수정등

< 정관 변경(안) 신, 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변 경 안	비 고
제 23 조(소집통지 및 공고) ① (생략) ② <u>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 국경제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 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(삭제)</u> ③ <u>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(삭제)를 함에 있어 ~ (생략)</u> ④ <u>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 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~ (생략)</u>	제 23 조(소집통지) ① (생략) ② <u>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 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 과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 ③ <u>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 에 있어 ~ (생략)</u> ④ <u>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 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~ (생략)</u>	주총소집 통 지 조항수정
제 30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 <u>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(삭제)</u> ② <u>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</u>	제 30 조(의결권의 행사) ① <u>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</u> ② <u>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</u>	의결권 행사조항 수정

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(삭제)	주주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서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,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(신설)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	
제 39 조(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(수정)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(사장)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(수정)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(수정)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(수정) ⑤ ~ ⑥ (삭제)	제 39 조(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)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,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5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의안 및 관련서류를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. 단, 예외적으로 경영상 긴급할 경우 적어도 3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. ③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⑤ ~ ⑥ (삭제)	이사회 소집기일 조항수정
부 칙(2013.03.20) 본 정관은 2013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	부 칙(2013.07.19) 본 정관은 2013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	효력발생 시기지정

- 제 2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구 분	성 명 (생년월일)	주요학력 및 경력	추천	상근 여부	최대주주와 의 관계	국적
사내 이사	이병화 (1968.08.13)	- 호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- 한국자산관리공사 - 세무회계사	이사회	비상근	없음	대한 민국
사내 이사	김덕일 (1958.05.15)	- 일본 게이오대학 경영대학원 졸업 - ㈜LG 상사 중국지사 대표 - NYK 무역 대표이사 - 리움즈 화장품 대표이사	이사회	상근	본인	대한 민국
사외 이사	박노식 (1966.01.01)	-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- 국민은행 - 미산투자개발	이사회	비상근	없음	대한 민국
사외 이사	이경훈 (1971.10.22)	- 호남대학교 행정학과졸업 - (現)다올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	이사회	비상근	없음	대한 민국
사외 이사	고창석 (1953.08.06)	- 홍익대학교 졸업 - ㈜석정교역 - ㈜태두교역 대표이사 - ㈜사이버컴코리아 대표이사	이사회	비상근	없음	대한 민국

		- (주)CEC 대표이사				
사외이사	이상일 (1978.06.30)	- 미국 Brown 대학 전자공학과 대학원졸업 - Actel in 실리콘밸리 - (現)(주)티티엘 이사	이사회	비상근	없음	대한민국

- 제 3 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
구 분	성 명 (생년월일)	주요학력 및 경력	추천	상근 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국적
감사	박종례 (1952.04.10)	-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- 안산시 교육청 청소년상담 - 법무부 검찰청 청소년상담	이사회	비상근	없음	대한민국

- 제 4 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

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 및 부여조건

결의 방법	성 명	관 계	부여주식수(주)	부여기준일	행사기간	행사가격
			보통주			
주주 총회	윤재식	임직원	1,000,000	2013년 7월 19 일	2015년 7월 19일 ~ 2020년 7월 18일	- ★ 주총 승인 후 확정될 예정임
	부여 사항		- 당사 정관규정 제 12 조 제 1 항의 따라 2013년 7월 19일 임시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을 승인하기로 함			
	부여방법		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(또는 기명식 우선주 식)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(또는 기명식 우선주식)의 자 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 하는 방법			
합 계			1,000,000	-	-	-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증권회사에 주권을 위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 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.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14 조의 제 5 항 및 6 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.

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
위임인의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
6. 기타사항

금번 주주총회시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이점 널리 양해 양해바랍니다.

2013 년 07 월 04 일

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9-10

주식회사 쓰리원

대표이사 김 승 필 (직인생략)